■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[별지 제16호서식] <개정 2018. 11. 16.>

[]직업소개사업 []직업정보제공사업 폐업신고서 []근로자공급사업

※ []에는 해당	당되는 곳에 √ 표시	를 합니다.							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일자			처리기간	<i>=</i>	특시
	명칭								
사업소	소재지								
신고인	성명					생년월	일		
	허가 • 등록 • 선	신고번호				허가•	등록•신고	일자	
폐업연월일			년	Ç	월 <u>(</u>	일			
폐업사유									
「지어이자	المحتمال	rrial Olol 7kol 시구호	lı lel						
'직업안정법	ョ」 세35소에	따라 위와 같이 신고힘	[니다						
							년	월	일
신				<u>l</u>					(서명 또는 인)
직업안정기관의 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・군수・구청장									
	하가증·등록증·신고확인증 원본(직업소개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에 한정합니다) ※ 허가증·등록증·신고확인증의 분실 등의 경우에는 아래 하단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허가증·등록증·신 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							• 신	수수료
	[허가 증 • 등록증 •	신고확인증 분실 등 사유]							

허가증 • 등록증 • 신고확인증 원본(직업소개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에 한정합니다) ※ 허가증 • 등록증 • 신고확인증의 분실 등의 경우에는 아래 하단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허가증 • 등록증 •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[허가증 • 등록증 • 신고확인증 분실 등 사유] 참부서류 성음

유의사항

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등록이나 허가를 받은 자나 무료직업소개사업·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.

참고사항

「직업안정법」 제35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, 직업정보제공사업,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신고 시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제출된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됩니다.